

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.

1. 대상 투자신탁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하이 아시아 드래곤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B2894

2. 주요 변경 내용 :

-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
-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(21.22%→17.82%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 시행일 : 2023년 08월 25일

4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(www.hi-asset.com)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구분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 시 유의사 항	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	1.~11.(생략) 12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.~11.(현행과 같음) 12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 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신설	<u>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</u> <u>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 (21.22%→17.82%)</u> <u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u> <u>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</u> <u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u>
5. 운용전 문인력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 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8.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	가. 투자대상 <u>(신설)</u>	가. 투자대상 - <u>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</u> <u>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 가. <u>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</u> <u>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</u> <u>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나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</u> <u>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- <u>증권의 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</u> <u>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</u> <u>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</u> <u>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

<p>10.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및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</p>	<p>다. 기타 투자위험 해지위험 : 이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(신설)</p>	<p>다. 기타 투자위험 해지위험 : 이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 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증권대차 거래위험 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				
<p>10.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: 21.22%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: 17.82%</p>				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및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반영</p>	<p>-</p> <p>※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(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을 포함합니다. 단,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추가)</p> <p>※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.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</p>	<p>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</p> <p>※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(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을 포함합니다. 단,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5 1832 1469 1980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</td> </tr> <tr> <td>기타비용</td> <td>876</td> </tr> </table> <p>※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.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</p>	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기타비용	876
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					
기타비용	876						

		<p>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 (추가)</p> <p>※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,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추가)</p>	<p>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5 215 1469 360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</td> </tr> <tr> <td>증권거래비용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 <p>※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,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5 506 1469 651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</td> </tr> <tr> <td>금융비용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	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증권거래비용	-	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금융비용	-
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									
증권거래비용	-										
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									
금융비용	-										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소득세법 개정내용 반영</p>	<p>나.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세액공제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할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[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과세 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) 중 적은 금액</p>	<p>나.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세액공제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과세 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</p>								

		<p>연금수령시 과세 : 연금소득세 5.5 ~ 3.3%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p> <p>(추가)</p>	<p>연금수령시 과세 : 연금소득세 5.5 ~ 3.3% 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.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p> <p>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1월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
--	--	--	--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- (신설)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갱신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주식의 매매회전율>
2. 연도별 설정 및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갱신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갱신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 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: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관계사 명 등 변경 반영	<p>가. 회사개요</p> <p>(2) 2022년 07월 25일부터 회사명 : <u>신한아이타스</u>(주) 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(☎ 02-2180-0400)</u> 홈페이지 : <u>www.shinhanaitas.com</u></p>	<p>가. 회사개요</p> <p>(2) 2022년 07월 25일부터 회사명 : <u>신한펀드파트너스</u> 주소 및 연락처 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18,19,20층 (☎ 02-2180-0400)</u> 홈페이지 : <u>www.shinhanfundpartners.com</u></p>

6. 채권평가 회사에 관한 사항	관계사 사명 변경 반영	가. 회사개요 회사명 : <u>KIS채권평가</u> (주)	가. 회사개요 회사명 : <u>KIS자산평가</u> (주)
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<p>나. 임의해지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을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중략)</p> <p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나. 임의해지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을 최초로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중략)</p> <p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공시</p> <p>①~⑦ (생략)</p> <p>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</p>	<p>나. 수시공시</p> <p>(2) 수시공시</p> <p>①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정 이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</p>

		<p>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⑩ <u>(신설)</u></p> <p>⑩ (생략)</p>	<p>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⑩ <u>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/u></p> <p><u>가.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</u></p> <p><u>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</u></p> <p><u>다.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</u></p> <p><u>라.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</u></p> <p>⑪ (현행과 같음)</p>
[붙임] 용어풀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<u>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.</u>	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.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구분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 <p>주 3)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[1]년 [8]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[3]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</p> <p>주 3)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[1]년 [8]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[2]년 [11]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 수익률)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